

공 시 송 달 공 고

주택법 위반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전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관련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부재(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5년 5월 1일

강 원 도 지 사

1. 처분내용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2. 처분근거 : 주택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14조
3. 처분원인 : 등록기준 미달, 보고의무 및 등록사항변경신고 미이행
4. 처분대상 :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참조
5. 의견제출기한 : 2015. 5. 14(목)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 건축주택과(☎033-249-34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



강 원 도



수신 (주)티제이씨앤씨 대표이사 김영주 귀하 (우200-943 강원도 춘천시 남춘천길 13 (퇴계동)3층)
(경유)

제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주)티제이씨앤씨]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주택법위반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당사자	성명(명칭)	(주)티제이씨앤씨 대표이사 김영주						
	주 소	춘천시 남춘천길 13 3층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보고의무(영업실적 등)미이행, 기술자 변경신고 미이행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경고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주택법」 제13조, 「주택법시행령」 제14조 및 [별표1] 제2호 자목 2)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강원도청	부서명	건축과	담당자	박 그 림	
		주소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전화번호	033)249-3462		
	전자우편 주소	parkpicture@korea.kr			팩스번호	033)249-4057		
제출기한		2015년 4월 21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슬·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 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강 원 도 지 사

주무관

박그림

주택담당

허병규

건축과장

2015. 4. 7.
박재명

협조자

시행 건축과-5534

(2015. 4. 7.)

접수

우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봉의동)

/ <http://provin.gangwon.kr>

전화번호 033-249-3462

팩스번호 033-249-4057

/ parkpicture@korea.kr

/ 비공개(5)

문화도민, 세계로! 미래로 !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



강 원 도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3.0

수신 (주)월드 대표이사 원윤식 귀하 (우220-100 강원도 원주시 봉화로 65 1층 103호(단계동))
(경유)

제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주)월드]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주택법위반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당사자	성명(명칭)	(주)월드 대표이사 원윤식											
	주 소	원주시 봉화로 65 1층 103호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변경신고 미이행(대표자)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경고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주택법」 제13조, 「주택법시행령」 제14조 및 [별표1] 제2호 자목 2)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강원도청	부서명	건축과	담당자	박 그 림						
		주소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전화번호	033)249-3462						
		전자우편 주소	parkpicture@korea.kr			팩스번호	033)249-4057						
	제출기한	2015년 4월 21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기등의 취소 ② 신분·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 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주무관 박그림 주택담당 허병규 건축과장 2015. 4. 7.
박재명

협조자

시행 건축과-5532 (2015. 4. 7.) 접수

우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봉의동) / <http://provin.gangwon.kr>

전화번호 033-249-3462 팩스번호 033-249-4057 / parkpicture@korea.kr / 비공개(5)

문화도민, 세계로! 미래로 !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



강 원 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주)강한세종건설]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주택법위반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당사자	성명(명칭)	(주)강한세종건설 대표이사 윤강한							
	주 소	고성군 거진읍 거탄진로 129번길 12(등록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1403-24 4층(주소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록기준(사무실, 기술자)미달, 변경신고 미이행(대표자)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영업정지 3개월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주택법」 제13조, 「주택법시행령」 제14조 [별표1] 제2호 나목 1) 등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강원도청	부서명	건축과	담당자			
		주소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전화번호	033)249-3462			
	전자우편 주소	parkpicture@korea.kr			팩스번호	033)249-4057			
	제출기한	2015년 4월 21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 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강원도지사



수신자 (주)강한세종건설 대표이사 윤강한 귀하 (우219-902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탄진로129번길 12), (주)
강한세종건설 대표이사 윤강한 귀하 (우612-060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1403-24 4층)

주무관 박그림 주택담당 허병규 건축과장 2015. 4. 7.
박재명

협조자

시행 건축과-5526 (2015. 4. 7.) 접수

우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봉의동) / <http://provin.gangwon.kr>

전화번호 033-249-3462 팩스번호 033-249-4057 / parkpicture@korea.kr / 비공개(5)

문화도민, 세계로! 미래로 !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의견제출 내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강원도지사

귀하

유의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